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6,745,633	9,502,369
일반회계		270,434,524	8,113,036
특별회계		46,311,109	1,389,333
	공기업특별회계	35,400,697	1,062,0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479,619	734,3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21,078	327,632
	기타특별회계	10,910,412	327,312
	주택사업특별회계	9,700	2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6,391	32,292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6,204	4,38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96,635	20,899
	공업단지특별회계	843,200	25,29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63,542	16,9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73,132	8,19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7,262,388	217,872
	기반시설특별회계	39,220	1,1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9,38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